

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(8세대) - 84㎡B : 4세대 - 83㎡C : 4세대

구분	내용
공급 대상	· 전용면적85㎡ 이하 / 주택 건설량의 20%범위 내 / 9억원 초과 주택 제외
청약 통장	·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해당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
신청 자격	① 무주택 세대 구성원 ②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(혼인신고일 기준), 혼인기간 동안 무주택 유지(단,2018.12.11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가능(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)) ③ 입주자 모집공고일 거창군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,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구성원 ④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」 제9조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-우선공급(70%)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00% 이하인자(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%이하) -일반공급(30%)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40% 이하인자(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60%이하)
유의 사항	· 임신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확인, 출산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,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함. ·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, 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. ·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 하여야 하고,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입양관계증명서)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, 서류 미제출,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, 향후 신청이 제한됨. ·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로 인정되나,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자녀 수를 선정할 때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의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(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)하여 선정. 단, 배우자의 친자녀(전혼 배우자의 자녀)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됨.

■ 당첨자 선정방법

• 선정 순서 : 【 소득 ▶ 순위 ▶ 거주지역 ▶ 자녀 수 】

- 1) 우선공급(70%) : 소득100%(배우자 포함 120%) 이하 자에게 우선 공급 / 일반공급(30%) 주택은(우선공급에서 미공급된 주택을 포함)은 일반공급 소득기준인 자에게 공급함.
 - 2) 최초 입주가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, 1순위에 우선공급
 - ① 제1순위 :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(임신 중 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)하여 자녀가 있는자
 - ② 제2순위 :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→ 무자녀 또는 2018.12.11.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
 - 3)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시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함.
 - ① 거창군 거주자 ②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자(태아를 포함)
 - ③ 미성년 자녀 수(태아를 포함)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
- ※ 재혼인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(입양 포함)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로 인정되나,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선순위 선정 시 이전 배우자와의 자녀수도 포함

■ **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 서류**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[전년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(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)]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 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 전년도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을 제출	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, 해당직장
	신규 취업자/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금년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(직인날인)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(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)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	①,②,③ 해당직장 ④국민연금공단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	①,②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	①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원(사본)	① 세무서
	간이과세자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	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※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	① 세무서
	신규사업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수 없는자	[국민연금 가입자]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※ 표준(기준)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[국민연금 미가입자]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※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	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/ 세무서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	① 세무서 ② 등기소

■ **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 서류**

해당자격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	①,② 세무서/해당직장
국민 기초생활 수급자	①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	①주민센터
비정규직근로자 / 일용직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 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② ①번 서류가 없는 경우,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※ 근로계약서, 월별급여명세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	①해당직장 ②국민연금 관리공단
무 직 자	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(2020.01.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) ※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	건본주택

해당자격	구분	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(2022년 적용)							
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	
소득 기준 구분	우선공급 (기준소득, 5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이하	~6,208,934원	~7,200,809원	~7,326,072원	~7,779,825원	~8,233,578원	~8,687,331원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00%초과 ~120% 이하	6,208,935원~ 7,450,721원	7,200,810원~ 8,640,971원	7,326,073원~ 8,791,286원	7,779,826원~ 9,335,790원	8,233,579원~ 9,880,294원	8,687,332원~ 10,424,797원
	일반공급 (상위소득, 2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초과 ~140% 이하	6,208,935원~ 8,692,508원	7,200,810원~ 10,081,133원	7,326,073원~ 10,256,501원	7,779,826원~ 10,891,755원	8,233,579원~ 11,527,009원	8,687,332원~ 12,162,263원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00%초과 ~160% 이하	7,450,722원~ 9,934,294원	8,640,972원~ 11,521,294원	8,791,287원~ 11,721,715원	9,335,791원~ 12,447,720원	9,880,295원~ 13,173,725원	10,424,798원~ 13,899,730원
소득기준 초과 / 자산기준 충족 (추첨제, 3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40%초과, 부동산가액(3.31억원) 충족	8,692,509원~	10,081,134원~	10,256,502원~	10,891,756원~	11,527,010원~	12,162,264원~	
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60%초과, 부동산가액(3.31억원) 충족	9,934,295원~	11,521,295원~	11,721,716원~	12,447,721원~	13,173,726원~	13,899,731원~	

- 기준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초과 시 일반공급 20%(상위소득)[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기준 120%초과~160%이하)]를 선택하여야 합니다.
- 상위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
- 추 첨 제 :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(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%,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)은 초과하나,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(3.31억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